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  
**석 면 관 리 대 책**

2007. 1.

# - 목 차 -

I 추진배경 .....	1
II 석면 관련 각종 제도 .....	2
III 현 황 .....	4
IV 문 제 점 .....	6
V 향후대책 .....	7
1.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2.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3.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4.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 등	

## I 추진 배경

- 석면함유 건축물 불법 철거로 인한 근로자 및 인근주민의 노출 위험에 대한 지속적 언론 보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의 불법철거업체 고발 등 사회적 관심 증가
  - ※ '06.11 국정감사 지적사항(안홍준, 한선교)
    - 석면해체·제거 허가실적 부진 및 허가 작업장 조치기준 미준수 등
- 석면은 '70~'90년대에 집중 수입, 인체 잠복기간(약 30년)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 해체 및 수입된 석면함유제품 사용과정에서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급증 우려
- 최근 방배역 등 17개 역사 승강장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지하철 진동 및 노후화로 석면 분진 노출 위험
  - 서울지하철 노조는 종사근로자 건강영향에 대한 제반 조사, 건강관리지침 개발 및 정부, 노·사대표, 전문가로 T/F팀 구성 요청

### < 외국의 석면관련 동향 >

- 일본의 경우 향후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08년 계획했던 석면 전면 금지일정을 앞당겨 시행('06.9)
  - ※ 석면 건축자재 생산업체(구보타)에서 근로자 79명 사망 보도('05.6)
- 영국은 매년 3,500명이 석면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계
- 호주는 2020년까지 18,000명이 석면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

## II 석면 관련 각종 제도

### □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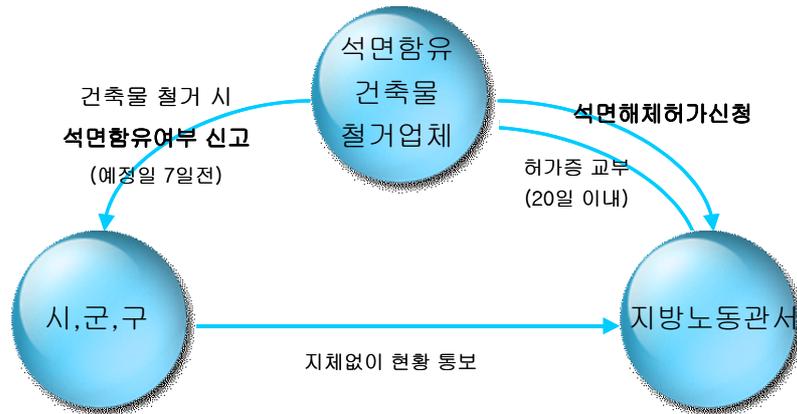
- 백석면을 제외한 청석면 등 5종의 석면은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산안법 제37조)
  - 석면함유제품 중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금지 ('06.9.13 고시)
- 석면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노동청(지청)장의 사전 허가(산안법 제38조)
  - 석면 등 13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 시 사전에 사업주가 시설·설비 등을 적절하게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
  -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및 설비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
- 석면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 실시(산안법 제42조)
  - ※ 석면 노출기준 : 0.1개/cm<sup>3</sup>(고시 제2002-8)
- 석면 취급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산안법 제43조)
- 석면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게시(산안법 제41조)
  - ※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명,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사항 등 16가지 정보
- 석면 취급업무 3년 이상의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해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 실시(산안법 제44조)

## □ 건교부

- 건축물을 철거·멸실 또는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신고(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24조)

※ 철거 신고의무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군·구는 석면함유 신고접수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청에 통보



## □ 환경부

- 석면폐기물 중 석면부스러기, 분진 등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며 비산되지 않도록 고형화하여 폐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백석면이외의 모든 석면에 대해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06.2 고시)
-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공기중 석면농도를 0.01개/cc 이하로 유지(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 건물에서는 공기중 석면농도를 0.01개/cc 이하로 유지(학교보건법)

### Ⅲ 현 황

#### □ 석면 개요

-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6종)

※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 유발 가능

-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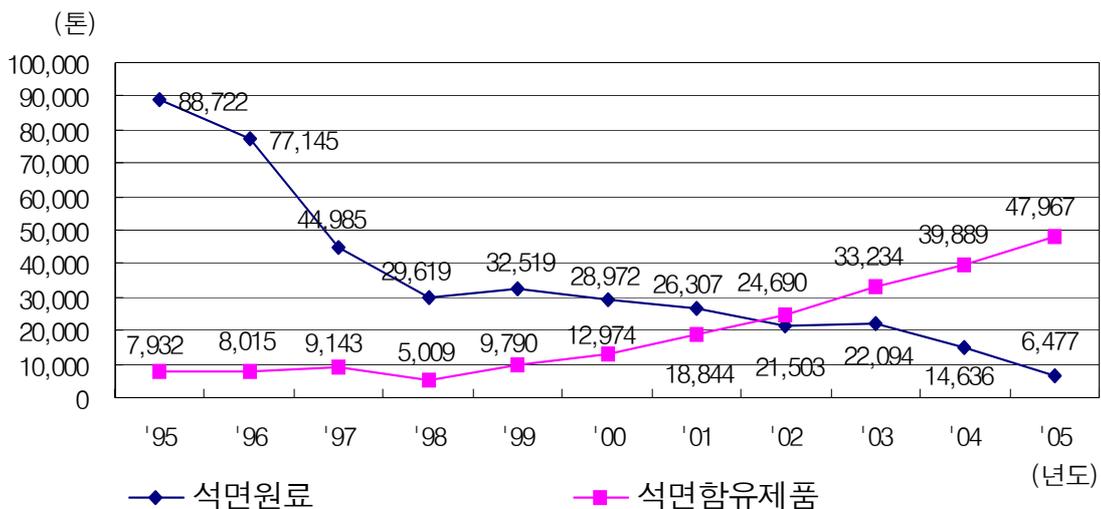
- 석면함유 제품은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제품(내화재), 석면방직제품(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

#### □ 석면원료 및 석면제품 수입 현황

- 그간 석면 규제에 따라 석면 원료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 석면원재료 수입 : 8만9천톤('90년대) → 6천톤('05) <1/15배 감소>

석면함유제품 수입 : 8천톤('90년대) → 4만8천톤('05) < 6배 증가>



□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는 총 43명이며 질병별로는 폐암 28명, 악성중피종 11명, 기타(석면폐 등) 4명임

년도	계	'00	'01	'02	'03	'04	'05	'06.8
계(명)	43 (100%)	4	2	3	14	4	10	6
질병자(명)	7 (16%)	-	-	1	2	1	2	1
사망자(명)	36 (84%)	4	2	2	12	3	8	5

□ 서울지역 건축물 철거신고 현황

- '06년도 서울지역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건수 5,578건 중 시·군·구로부터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으로 통보된 건수는 총 1,598건(28.6%)이며, 이중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5건임

구분 (단위 : 건수)	서울청	서울 강남	서울 동부	서울 서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관악	총계
철거신고(지자체)	360	443	689	1,781	687	589	1,029	5,578
노동부 통보	124	28	12	112	687	589	46	1,598
석면함유 신고	0	4	0	1	0	0	0	5

※ 건축물 철거신고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며 전국 통계 부재

□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 실적

-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실적은 총 872개소이며  
- '04년 8개소, '05년 115개소, '06년 749개소 허가
- '06년 석면 의심 건축물 불시 점검결과 286개소 점검, 217건 행·사법조치

지방청	점검 사업장수	점검결과(건수)				
		계	시정지시	사용중지	작업중지	사법조치
계	286	217	157	0	49	11

※ '06.12월까지 불법 해체·제거 적발시 허가받아 작업토록 시정지시하고 이를 위반시 사법조치(감독관집무규정)

## IV 문제점

- 건축물 석면함유 허위신고 및 통보 지연 등
  -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여부를 조사·기입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누락 또는 허위기재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시·군·구는 석면함유건축물 철거 등 신고시 지방노동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로 철거가 완료되어 감독 곤란
  - 석면해체·제거 허가 신청과 작업기준 준수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 증가로 불법 행위 일상화
- 석면 사전조사인력 및 분석기관, 전문철거업체 부족
  - 건축물 등 석면 사전조사 인력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노사간 주장이 다를 때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움
  - 전국 석면분석 수요에 비해 석면 전문 분석기관 부족으로 석면해체·제거 소요 시간 지체 및 비용 증가
  -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할 전문 철거업체 부족 및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 부족
- 불법 철거 단속 감독인력 부족 및 처벌의 실효성 문제
  - 증가하는 석면해체·제거허가 신청 처리 및 불법 철거 단속 등에 필요한 현장 점검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
  - 1차 적발시 시정조치하고 2차 적발 시 사법조치하나, 처벌 수준이 낮음
- 지하철 등 공공시설 석면 관리 필요성 대두
  - 학교, 관공서,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노출이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석면 노출 실태 파악 및 노출방지 대책 미흡

## &lt; 주요 추진과제 &gt;

- ◇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구체화 및 정보제공
  -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 ◇ 석면해체·제거 관련 인프라 구축
  -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사전조사자 육성
  -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 도입
  -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 도입
- ◇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석면시멘트 등 불법 제조·수입·사용 방지
  - 기타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석면 전면 금지에 따른 타법 정비 요청
- ◇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 등
  - 건축물내 석면지도(Map) 작성 및 관리
  - 석면 관련 ILO협약 비준 추진
  - 석면 적정 관리를 위한 TF 구성·운영
  - 석면관련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 1. 불법 석면해체·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여부 허위신고 방지
  - 석면함유여부 신고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 시·군·구에 주기적인 확인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 홍보로 무허가 석면해체·제거 현황을 신속히 파악·관리
  
-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구체화 및 정보제공
  - 석면 비산의 정도에 따른 작업 유형 구분 및 기준 정비
  - 분무된 석면, 실내·외 석면 작업 등 특성에 맞는 조치 기준을 정비하고
  - 위생설비 설치, 흡연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
  -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 파악이 용이하도록 대표적인 석면함유자재 리스트 마련 및 노동부 홈페이지 석면 전용 배너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마련
  - 철거 현장 불시 점검 강화 및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
  - 불법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실제 벌금부과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금전적 제재 강화(산안법 개정)
  - 과태료 전환 전에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벌금 강화 추진

## 2. 석면해체 · 제거관련 인프라 구축

### □ 건축물 석면함유여부 사전조사자 육성

-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를 민간협회에서 교육 실시 및 이수자 수료증 지급 등을 통해 육성
- 석면조사 없이는 건축물 철거를 할 수 없도록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결과서 첨부 의무화 검토(건교부와 협의)

### □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 도입

- 석면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분석인력, 장비 요건 등을 관리하고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 극대화
- 석면분석에 사용되는 분석장비에 대하여 표준 기술상의 지침(KOSHA Code)으로 제정 · 홍보
- 민간 석면분석기관 확대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희망기관이 분석장비 구입시 자금 융자
- ※ 분석장비 : 위상차현미경(약 2천만원), 편광현미경(약 4천만원), X-선 회절분석(약 1억원), 전자현미경 분석(약 2억원)

### □ 석면해체 · 제거 전문업체 등록제 도입

- 석면 해체 · 제거 전문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여 철거업체 인력, 장비 등 관리 및 육성
- 등록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민간협회) 및 정부는 해체 · 제거 작업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조치기준 미달시 등록 취소 등 작업기준 준수 유도

### 3.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 석면시멘트 등 불법 제조·수입·사용 방지

- 2007.1월부터 금지되는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의 수입을 관계부처(재경부, 산자부 등)와 협의하여 통관 단계부터 차단

※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 금지에 관한 고시 제정('06.9.13)

- 금지 대상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분석하여 불법 제조·수입 여부 조사 및 범위반시 사법 조치

#### □ 기타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 상반기중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 방안 마련

- 석면가스켓,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8년말까지 단계적인 금지

※ 석면 금지일정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06.12)

※ 전면 사용금지 국가 : 일본·호주·영국 등 32개국

#### □ 석면 전면 금지에 따른 타 법령 정비(관계부처 협의)

-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에서 석면제품 사용 권장에 대한 모든 조항 삭제(건교부, 행자부)

## 4. 공공시설 석면실태 파악 및 관리 등

### □ 건축물내 석면지도(Map) 작성 및 관리

- 전국 공공기관의 표본을 선정하여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 ※ 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우선 선정
- 작성된 석면지도를 포함한 석면건축물 관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해당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
- 지하철 노·사와 협의하여 석면 실태파악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 □ 석면 관련 ILO협약 비준 추진

-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석면 종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준과 조화
-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노사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비준의뢰('06.11)하였으며 현재 외교통상부 검토중
  - ※ 최근 일본을 포함하여 27개국 비준
  - ※ 주요내용: 석면사용 금지추진, 석면함유 건물 해체 자격 규정, 작업중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조치 규정 등

### □ 석면 적정 관리를 위한 TF 구성·운영

- 석면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토의 및 자문을 위해 「석면관리TF」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
- 구성 :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업계(지하철, 철거업체 등), 안전공단, 노동부 등

### □ 석면관련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 석면해체·제거 현장 지도·감독강화를 위한 인력 강화
- 감독관, 공단직원 석면교육 과정 개설·상시운영